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양세진, 이강준 : 723-5302)

제 목 인사청문회 평가토론회 개최

날 짜 2000년 6월 30일 (금) (총 2 쪽)

보 도 자 료

인사청문회 평가토론회 개최
「인사청문회 어떻게 할 것인가?」

- 6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대강당 -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 박상증 · 박은정)는 6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인사청문회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형완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와 김수진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이화여대 정치학)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심재철의원(한나라당), 함승희의원(새천년민주당), 이국운교수(한동대 법학), 한상희교수(건국대 법학)가 참석하였다.

2. 김수진교수는 발제를 통해 청문회제도는 "민주이행 이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위상을 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게 조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주요 공직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한과 의회의 인준권한의 대등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정사상 첫번째로 시행된 이한동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제도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로는 ① 10일간으로 규정된 사전 준비 기간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하기에 턱없이 짧았고, ② 정부기관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혹은 지연시키거나 대단히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할 수 없으며, ③ 이틀로 고정된 청문회 기간은 적격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너무 짧았음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운영상의 문제로는 ① 총리 후보가 국회의 정식 임명동의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

하는 등 총리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과거의 초헌법적 관행을 여전히 반복했고, ②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당파적 입장과 계산을 우선시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데 실패하고 청문회를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으며, ③ 총리 후보의 과거 행적과 발언, 그리고 재산형성과정 등에 집중되었던 반면 총리라는 직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정책방향과 비젼을 깊이 있게 검증해 내지 못했고, ④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의 결과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주는 데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⑤ 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일사불란한 당론 표결에 맡김으로써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통과의례로 격하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3.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인사청문회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제도에 있어서는 ① 열흘에 불과한 사전조사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②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기관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③ 실제 청문회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 가량으로 늘리고, 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며, ④ 고위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국정원장 등 인사청문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국회의 임명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직을 수행하는 초헌법적인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② 공직후보를 선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과정을 거치고, ③ 이와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공직후보를 지명하기 전에 의회(의 리더들)와 사전협의를 하며, ④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지, 후보자의 성품과 도덕성, 전문적 자질과 이를 떠받쳐주는 경력, 소신과 이념적 성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⑤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와같은 협의를 할 의사가 없을 경우 국회는 공직후보를 자율적으로 조사·청문할 수 있는 권리·의지·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⑥ 청문회의 결론은 의회의 권위를 실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⑦ 공직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동의는 당론에 입각한 당파적 처리보다 행정부의 권한행사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서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국운교수는 이한동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수의 논리와 정치적 기회주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정치적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으며, 심재철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야당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음을 천명하고, 이를 명분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청문회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